【국립춘천병원 공고 제2022 - 56호】

2022년도 간호조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춘천병원에서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간호조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국립춘천병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근무부서	인원	담당업무
간호조무직	간호조무서기보	의료부 간호과	3명	○ 정신질환자 간호보조 업무 등 ○ 병동근무(3교대)

* 직무기술서 참조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응시자격(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간호조무직	간호조무서기보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에 대해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에서 간호조무사로 **정신질환자 간호보조업무** 등과 관련된 근무경력 * 병원, 종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시간제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근무시간 비례하여 일부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급구조사 1급·2급,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4.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2명 이하(4배수 이하)인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12명 초과(4배수 초과)인 경우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12명(4배수)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 ④ 직무관련 자격증, 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 서류전형 평정표 : [붙임2~3]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 고	2022. 9. 23.(금)~2022. 10. 4.(화)	·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게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원서접수	2022. 9. 28.(수)~2022. 10. 4.(화)	·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 10. 27.(목)	·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예정)	2022. 11. 3.(목)	·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022. 11. 17.(목)	·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2022. 9. 28.(수) ~ 2022. 10. 4.(화)**

* 접수시간은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다. **접수처** : 국립춘천병원 본관2층 기획운영과(서무팀)

(우2440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 앞(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명기)

라.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8.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목록** 1부(양식:[별지서식①])

나.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양식:[별지서식②])

- 정부수입인지 부착 : 5천원

* (수입인지)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수입인지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가 제출해야 함)

다. **이력서** 1부(양식:[별지서식③])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양식:[별지서식④])

마.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양식:[별지서식⑤])

바.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사.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아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1부

-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카.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양식:[별지서식⑥])

파.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양식:[별지서식⑦])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11. 17. ~ '22. 12. 17.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84조의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장,「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 033-260-3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립춘천병원	의료부 간호과

주요업무	○ 환자 간호보조 업무(3교대 근무) ○ 환자 안전관리 업무 ○ 병동시설 및 환경점검 관리 업무 ○ 산책 및 프로그램 참여 환자 이동관리 업무 ○ 병원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지식	○ 정신질환자 간호보조 업무에 필요한 지식 ○ 성실성과 책임감,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간호조무**	
	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